

任한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봐서 이 條項 그대로 놔두더라도 앞으로 運營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權赫柱委員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에 관한 것은 예를 드린거고요, 물론 區廳長님이 어린이를 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第4條에 動物愛好團體會員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역시 動物에 관한 모든 性質을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아무나 動物을 管理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제가 答辯을 좀 듣고자 했는데요, 사실 막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듣게 되면…….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動物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者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權赫柱委員 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거든요. 이 條項은…….

○委員長 白昌鉉 우리 委員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動物을 다루다가 人事事故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杞憂에서 하는 것이니까 執行部에서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市民의 한 사람도 그런 피해를 보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施行을 하실 적에 區廳長이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 다만 生活環境分科委員들이 이 法을 정할 적에 이러한 배려를 했노라는 것을 기회가 있으시면 會議하시는데 함께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質疑하실 분 안 계십니까?

○金昌學委員 그 部分에서는 조금 명시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申龍吉委員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委員長 白昌鉉 그러면 局長님, 修正을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條例案件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신 動物의 사육에 상당한 經驗이 있는 者를 追加하는 條件으로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라도 피해가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된 것으로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의 방법,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유기동물의 보호등)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동물은 등말원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각대금은 해당구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④ 구청장은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 3 조 (보호시설)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동물보호 관리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동물보호 관리

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보호동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의사 또는 동물애호단체의 회원
2.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제 5 조 (임무) 관리인은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보호동물이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사육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해촉) 구청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7 조 (위탁보호) ① 구청장은 관리인을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등에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 5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임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 6 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 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한다.

제 9 조 (소요경비 지급)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의 노임, 관리인의 수당, 공수의의 진료비, 위탁보호수수료등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 10 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보호조치중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을 적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요경비 산출기준표
(제 9 조 및 제 10 조 제 1 항 관련)

1. 사료급여 기준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량(1마리/1일)
개	10kg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봉조립300g
	10kg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봉조립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 또는 봉조립 300g

비고: 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 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관리인에 대한 수당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위탁보호수수료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4. 포획인부의 노임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